

「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」

제정 1998.11.16 통일부고시 제98-3호

개정 1999. 8.18 통일부고시 제99-3호

개정 2005. 1.31 통일부고시 제05-1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거 금강산단체관광객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고시는 금강산 단체관광객, 금강산 관광 관련 배·여객기·차량 등의 승무원 및 금강산 관광안내원 중 남한주민 또는 재외국민인 자(이하 각각 "단체관광객", "승무원", "안내원"이라 한다)에 대해 적용한다.

제2장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

제3조(신청서류) ① 단체관광객은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「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」의 발효 이후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및 금강산 관광신청서로 한다.<개정 '99.8.18 >

③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사업자를 통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.

제4조(증명서발급협의)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, 협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자명단을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. 다만, 수시방북증 소지자 및 초·중·고등학생 단체관광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 삭제<'99.8.18>

제6조(증명서의 소지) 통일부장관은 단체관광객에 대해 대표자를 지정하여 북한방문 승인 공문을 소지하게 하고,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소지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발급)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3조 내지 제6조의 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적용한다.

제3장 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절차

제8조(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한 증명서발급) 통일부장관은 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9조(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 신고)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승무원 및 안내원이 승인받은 방문기간 중에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「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가 정하는 북한방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 (99.8.18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5.1.31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